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차관 밑에 설치한 스마트해산물류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, “수발”을 “접수·발송”으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,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6. 00. ~ 2021. 7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해양수산부령 제 호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10항제2호 중 “제전”을 “행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외자”를 “외국자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3항제6호 중 “인공어초시설”을 “인공어초시설(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)”로 한다.

제11조제6항제5호 중 “외자”를 “외국자본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제2호 중 “수발”을 “접수·발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조위(潮位)관측소”를 “조위(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)관측소”로 한다.

제22조제7항제6호 중 “선석”을 “선석(선박을 매어두는 위치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

항 중 “2021년 7월 31일”을 “2022년 1월 31일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해양정책실) ① ~ ⑨ (생략)	제7조(해양정책실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해양레저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⑩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전국해양레저스포츠 <u>제전</u> 에 관한 업무	2. ----- <u>행사</u> ----- -----
3. ~ 12. (생략)	3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마리나항만개발 사업 관련 민자· <u>외자</u> 유치 및 국제협력	13. ----- ----- <u>외국자본</u> -----
14. ~ 25. (생략)	14. ~ 25. (현행과 같음)
⑪ ~ ⑮ (생략)	⑪ ~ ⑮ (현행과 같음)
제8조(수산정책실) ① ~ ⑫ (생략)	제8조(수산정책실) ① ~ ⑫ (현행과 같음)
⑬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⑬ ----- -----.
1. ~ 5. 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인공어초시설</u> , 바다목장, 바다숲 등 수산자원 번식환경의 조성·관리	6. <u>인공어초시설(바닷속 동식물의 번식을 돕는 인공시설을 말한다)</u> -----
7. ~ 24. (생략)	7. ~ 24. (현행과 같음)
⑭ ~ ⑮ (생략)	⑭ ~ ⑮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항만국) ① ~ ⑤ (생략)	제11조(항만국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항만연안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⑥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민자 · <u>외자</u> 유치 및 국제협력	5. ----- -- <u>외국자본</u> -----
6. ~ 19. (생 략)	6. ~ 19. (현행과 같음)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제16조(해양조사사무소) ①·② (생 략)	제16조(해양조사사무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.	③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문서 <u>수발</u> 및 보존	2. --- <u>접수·발송</u> ----- -----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조위(潮位)관측소</u> 의 운영 및 관리	7. <u>조위(조수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를 말한다) 관측소</u> ----- -----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2조(지방해양수산청) ① ~ ⑥ (생 략)	제22조(지방해양수산청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항만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⑦ ----- 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<u>선석</u> 및 정박지의 관리·운	6. <u>선석(선박을 매어두는 위치</u>

영	<u>를 말한다. 이하 같다</u>) ----- -----
7. ~ 15. (생 략)	7. ~ 15. (현행과 같음)
⑧ ~ ⑮ (생 략)	⑧ ~ ⑮ (현행과 같음)